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한국장학재단의 지도·감독 및 개선명령 권한 부여〉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654호)

2026. 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강경숙 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5. 11. 27.
3. 회부연월일 : 2025. 11.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청인 한국장학재단이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고 있음.

그런데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이나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고등교육기관의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자금 부정청구 등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이 시행하는 학자금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해 교육부장관과 한국장학재단이 지도·감독하고 이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6제2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재단의 학자금 지원 사업의 관리·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의6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6(지도·감독) (생략) <신설>	제49조의6(지도·감독)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교육부장관 및 재단은 고등 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학자금 지원 사업의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u>

나. 검토의견

- 한국장학재단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현재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 사업은 대표적으로 ①국

가장학금 지원 사업, ②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 사업, ③근로장학금 사업 등이 있는데, 국가장학금 지원 사업의 2026년 예산은 약 4조 3,670 억원이며,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¹⁾의 2026년 예산은 약 5,738억원으로 편성되었음.

2026년에 편성된 예산액 규모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장학금 등 학자금 지원 사업의 예산규모가 약 4조원을 상회하며, 이러한 사업 규모를 고려 할 때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관리·운영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최근 국가근로장학금 사업에서 부정청구(근 무시간을 허위로 입력)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2025년 교 육위원회의 국정감사(25.10.16.)에서 신한대학교 근로장학금 부정수 급 등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촉구 등에 대한 지적사항²⁾이 있었음.

1) 근로장학금 지원 사업이란 교내 및 교외에서 일정 시간 근무를 한 뒤 근로에 대한 대가를 장학금 으로 지급하는 사업임.

2) 2024년도 국가장학금 부정 수급 현황을 살펴보면, 부정수급 인원 총 259명, 금액 총 9,600만원 의 부정수급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됨.

- 참고로, 신한대학교 부정수급 조사 결과, 부정근로 대상자는 23명, 총 부정수급 금액은 4,470 만원으로 2025.2.20. 전액 환수조치되었으며, 근로장학생 및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학사업 참 여 제한 2년의 제재가 이루어짐.

<2024년도 근로장학금 부정수급 현황>

(2025. 11월말 기준, 단위: 명, 백만 원)

구분			2024
허위청구	허위근로	인원	138
		금액	29.7
	대리근로	인원	3
		금액	0.9
목적 외 사용		인원	-
		금액	-
오지급		인원	118
		금액	66.0
합계		인원	259
		금액	96.6

□ 이러한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부정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³⁾에 따라 행정청인 한국장학재단이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현행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6은 교육부장관이 ‘재단의 학자금 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으나, 근로장학금 등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고등교육법」 제5조⁴⁾의 포괄적인 지도·감독 규정에 따라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아울러, 한국장학재단 역시 고등교육기관의 학자금 지원사업에 관해서 직접 지도·감독할 권한이 법률상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근로장학금 업무 등을 수행하는 산학협력단 등이 부정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사후 조치 및 사전 예방 대책 마련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의 학

-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 제6호 라목의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자까지 환수한다.
- ② 행정청은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이자의 환수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 ③ 행정청은 부정이익 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 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 「고등교육법」 제5조(지도·감독) ① 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指導)·감독을 받는다.

자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개선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학자금 지원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짐.

다만, 개정안에 의할 때 교육부장관 뿐만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이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 및 개선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데, 이와 같은 개선명령은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⁵⁾으로 볼 수 있음.

- 참고로 개정안에 의한 지도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행정지도⁶⁾로 이해되는데, 행정지도의 경우 동의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나, 행정지도가 비권력적 사실행위라 할지라도 행정지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인정⁷⁾하고 있음.

따라서, 지도·감독권 및 개선명령 권한을 한국장학재단에 부여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 없이 처분 권한을 공공기관에 부여하도록 한다는

5) 「행정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이란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행하는 법 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6)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 권고, 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7) (대법원 2005. 7. 8. 선고 2005두487 판결)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단순 행정지도이나, 이에 대하여 판례는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피고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피고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행정처분으로 보고 있음.

점에서, 교육부장관에게 학자금 지원을 실시하는 대학에 대한 지도
· 감독권을 부여하고 재단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구체적
인 범위를 정하여 법률을 통해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관계기관의 의견을 살펴보면, 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과 개선 명령 권한을 부여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한국
장학재단에 대학을 직접 지도·감독하는 권한을 부여하기보다는 장
학재단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 6788-5193